

전북외국어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 일 공고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현 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학생회 임원 중 9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 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 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 (선거 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붙임 제2호 서식)

제5조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

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6조 (후보자 자격)

-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③ 회장(2학년), 부회장(2학년 1명, 1학년 1명)은 전교생의 직선에 의해 선출한다.

제7조 (후보자 등록)

-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매일 오후 3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인성생활안전부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3호 서식) 1부
 2. 추천장(붙임 제4호 서식) 1부
- ② 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4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붙임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무효와 사퇴)

-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6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7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9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4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8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후보자 홍보 포스터)

-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공고한 날까지 제출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 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급식실 등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11조 (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④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공고한 기간에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점심,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 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 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 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 간 다툼

나. 선거운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 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3조 (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 방법은 투표 용지(붙임 제9호 서식)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 ③ 위원회는 투표 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0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 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 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제14조 (개표)

-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0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둘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6.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로 판단한 것
-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1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2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15조 (당선인 결정)

-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 대의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④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 13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16조 (재선거)

-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7조 (보궐선거)

- ① 회장과 선임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선임학년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8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붙임 제15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19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12조 제1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0조 (학생자치회 임원 임기)

당선인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2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1학기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 (보칙)

-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이 규정은 학생자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서식 목록

1. 위원공고
2. 선거일공고
3. 후보자등록신청서
4. 추천장
5. 후보자등록공고
6. 후보자사퇴신고서
7. 후보자(등록무효)(사퇴) 공고
8.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9. 투표용지(예시)
10.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서
11. 개표결과
12. 선거록
13. 당선자공고
14. 이의신청서
15. 등록증
16. 공명선거 협조문
17. 투표 시 유의사항

[붙임 제1호 서식]

위 원 공 고

2024년 7월 10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위 원 명 단

구 분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3학년 6반	손 울	18기 학생회 회장
부위원장	3학년 8반	조채연	18기 학생회 부회장
위 원	3학년 2반	고아라	18기 학생회 부장
위 원	3학년 3반	김도현	18기 학생회 부장
위 원	3학년 7반	안승주	18기 학생회 부장
위 원	3학년 1반	장서윤	18기 학생회 부장
위 원	3학년 1반	김우진	18기 학생회 부장
위 원	3학년 7반	박지수	18기 학생회 부장
위 원	3학년 7반	정민지	18기 학생회 부장
위 원	3학년 7반	안새암	18기 학생회 부장

[붙임 제2호 서식]

선 거 일 공 고

2024년도 19기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일정

과 정	기 간 및 일 시	내 용
후보자 등록	5. 24.(금) ~ 5. 31.(금) 15:00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3호 서식) 1부 추천장(붙임 제4호 서식) 1부
후보자 기호 추천	5. 31.(금) 16:00	후보자 기호 추천
선거용 벽보 게시	6. 11.(화) ~ 7. 10.(수)	급식실 앞, 이상관 1층, 본관 1층
유세 및 홍보, 개인 소견발표	6. 11.(화) ~ 6. 14.(금)	시간: 중식 및 석식 시간 진행 (피켓 2개)
합동 소견발표	7. 8.(월)	후보자 공약 발표
공개 토론회	7. 9.(화)	후보자 간 질의응답 공통질문 및 질의응답
최종 연설 및 투표	7. 10.(수)	최종 연설(방송) 후 투표
이의신청 기간	7. 10(수) ~7. 12(금)	이의신청 기간
당선자 확정	7. 15.(월)	당선자 발표 및 당선증 교부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나.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3. 입후보자격

- 가. 2024년 5월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2학년에, 부회장은 2학년 또는 1학년에 재학중인 자
- 나. 선거권자 4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다. 성적 등의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붙임 제3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학년 · 반		생 년 월 일	

본인은 2024년 7월 10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장 1부.

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4호 서식]

추천장

■ 추천후보자

○ 성 명 :

○ 학년·반 : 제 학년 반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1부.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순	학 번	성 명	서 명	순	학 번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붙임 제5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회 장 후 보 자				부 회 장 후 보 자							
				2학년				1학년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붙임 제6호 서식]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학년 · 반 : 학년 반
2. 성 명 :
3. 사퇴이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서명)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7호 서식]

후보자 (등록무효) (사퇴)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등록무효)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무효) (사퇴)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후보자 성명	(등록무효) · (사퇴) 연월일	(등록무효) · (사퇴) 이유

※ 작성요령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붙임 제8호 서식]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2024년 7월 10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선거운동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선거운동도우미 명단

번호	학년·반	성명	선임·교체	비고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 교체시에는 ○○○와 교체라고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9호 서식]

투표용지예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투표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2		
3		
4		
5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2학년 회장, 2학년 부회장, 1학년 부회장 총 3장의 투표용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붙임 제10호 서식]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투표와 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투표참관인 명단

학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2. 개표참관인 명단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서명)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1호 서식]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선거

개 표 결 과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수 (마)	투표율 (%) (나/가)
		1	2	3	4	5			
						계 (다)			

검 열

위원	부위원장	위원장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집계표를 따로 준비하여 집계합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붙임 제12호 서식]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투·개표

가. 투표장소 :

나. 개표장소 :

2. 투·개표 일시

가. 투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3.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회 장 선 거			부 회 장 선 거					
				○학년			○학년		
선거인수	인			인			인		
투표자수	인			인			인		
기권자수	인			인			인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1		표	1		표	1		표
	2		표	2		표	2		표
	3		표	3		표	3		표
	4		표	4		표	4		표
	5		표	5		표	5		표
무 효 투표수	표			표			표		

4. 당선자 명단

회 장			부 회 장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 · 반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 · 반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제13호 서식]

당 선 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당 선 자 명 단

회 장		부 회 장	
학년 · 반	성 명	학년 · 반	성 명
		○학년 ○반	
		○학년 ○반	

[붙임 제1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학년 · 반	이 름
신 청 자		
이의신청건		
세부 설명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성명 _____(서명)

전북외국어고등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5호 서식]

당 선 증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제 학년 반
이름

위 후보는 년 월 일 실시한 학생
자치회 임원선거에서 있어서 회장(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북외국어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붙임 제16호 서식]

공명선거 협조문

2024년 7월 10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선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후보자는 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은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기 준]

1. 경 고

- 후보자간 다툼
-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2. 후보자 등록무효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3. 당선무효

-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붙임 제17호 서식]

투표 시 유의사항

투표 시에는 소중한 우리의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무효표가 됩니다.

[무효표 판정 기준]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투표용지가 찢어져 정규투표용지임을 알 수 없는 경우
3.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 또는 기표란 등에 2개 이상을 기표한 경우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하여 어느 후보자 쪽에 치우쳤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5.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더라도 투표용지에 '좋다' 혹은 '홍길동' 등의 문자를 기입하거나 √, △, ☆ 등의 기호를 기입하는 경우
6. 정해진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